

Legal Update

2024 년 5 월

공고일	제목	법령	유형	관할 관청	주요 제 · 개정(입법예고) 내용	입법 예고 종료일	시행일	관련 부서
5/7	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	고시	시행	공정위	■ 목적 :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· 규격 · 중량 ·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 ■ 주요내용 :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 -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 개월 이상 i) 포장 등에 표시, ii)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iii) 제품의 판매장소(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)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- 의무 위반 시 「소비자기본법」 제 86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(1 차 위반 시 500 만원, 2 차 위반 시 1,000 만원)	-	8/3	Value Stream Sales
5/21	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국무회의 통과	공정위	■ 주요내용 -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%까지 과징금 감경 조치 ->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 -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(이하 '협의회')는 수소법원에 통지 : (개시) 분쟁 당사자 정보, 조정 신청일, 신청 취지와 이유, 소송사건 번호 : (종료) 분쟁 당사자 정보, 조정 각하/종료 사유, 조정 결과, 소송사건 번호	-	대통 령 재가 즉시 시행	Value Stream
5/21	하도급법	시행령 개정안	국무회의 통과	공정위	■ 개정이유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<u>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%→50%로 확대하였음</u>.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 (최대 50% 감경)과 조사·심의 협조(최대 20% 감경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70%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어, <u>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70%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.</u> ■ 주요내용	-	공포 즉시 시행	Value Stream

					<u>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70%까지 과징금을 감경</u> 받을 수 있게 하고,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를 재정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. 5. 21. 국무회의를 통과함.			
--	--	--	--	--	--	--	--	--